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5
------	-----

2022. 12. 2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2.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7.5.)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단위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재정비 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나.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 내 법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 (안 제1조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례 근거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 (2022.7.5)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됨.

나. 지속가능발전 의미와 발전 경위

- 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¹⁾’을 시작으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²⁾’,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채택하면서 전세계적

1)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으로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 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³⁾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2007년)하였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함.
- 이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어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
- 그러나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와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담아 복원·격상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게 됨.

2)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 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빈곤퇴치, 환경친화적 소비 및 생산 패턴,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 제도체제, 양성평등, 교육 등 각 분야를 넘나드는 정책 이슈(Cross-cutting issues)들로 이루어져 있음.

3)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변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2007. 8. 3. 제정 - 2008. 2. 4. 시행	⇒	- 소관부처 : 환경부 - 2010. 1. 13. 제정 - 2010. 4. 14. 시행
	⇒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2022. 1. 4. 제정 - 2022. 7. 5. 시행

-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함.
 - 이 조례에 따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5~2019)을 수립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2015.4.)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12대 전략, 28대 과제, 30대 지표로 사업을 추진함.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0~2024)은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 비전 아래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및 108개 성과지표를 구성함.
- 현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을 비롯해 7곳에 불과하고, 10개 지자체는 기존의 환경기본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 중임.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구분	제정연월	조례명
서울	2017.0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충남	2018.0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주	2019.11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경기	2020.0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경남	2020.06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광주	2020.09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부산	2020.09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다. 주요 조문별 검토

(1) 기본전략 수립주기 변경 등(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 개정안은 “기본계획” 을 “기본전략” 으로 수립주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p>제2장 지속가능발전 <u>기본계획</u> 수립 등</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기본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u>기본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제2장 지속가능발전 <u>기본전략</u> 수립 등</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 ----- ----- <u>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u>을 20년----- -----.</p> <p>② <u>기본전략</u>-----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본전략</u>----- -----</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20년 단위)에 따른 것으로 지역 여건과 시민관심도를 반영해 마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장기 추진전략을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바람직한 입법체계로 볼 수 있음.
- 안 제4조제3항은 시장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점검하여

4)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년마다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함께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5)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 5)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안 제1조·제4조~제10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 -----.

-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일괄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의 기본전략 수립과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변경한 것으로 법률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4항, 안 제5조제3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4항, 안 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설></p> <p><신설></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 ----- ----- -----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p> <p>② 기본전략-----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기본전략----- -----</p> <p>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p>	<p>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 기본전략----- -----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 -----</p>	<p>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야 한다.</p> <p>② <u>이행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이행계획</u>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p> <p>2. <u>이행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 설></p>	<p>-----.</p> <p>② <u>추진계획</u>-----</p> <p>-----.</p> <p>-----.</p> <p>-----.</p> <p>-----.</p> <p>1. <u>추진계획</u>-----</p> <p>-----</p> <p>2. <u>추진계획</u>-----</p> <p>-----</p> <p><신 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u>추진계획</u>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전략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을 각각 “기본전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이행계획의 수립)”을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속가능발전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속가능발전 <u>기본계획</u> 수립 등</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기본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 략)</p> <p>2. <u>기본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기본계획</u>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u>이행계획</u>(이하 “<u>이행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속가능발전 <u>기본전략</u> 수립 등</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p> <p>----- <u>기본전략</u></p> <p>(이하 “<u>기본전략</u>”이라 한다)을 20년-----</p> <p>-----.</p> <p>② <u>기본전략</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본전략</u>-----</p> <p>-----</p> <p>③ 시장은 <u>기본전략</u>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기본전략</u>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 제17조에 따른 <u>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u>(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u>기본전략</u>-----</p> <p>----- <u>추진계획</u>(이하 “<u>추진계획</u>”-----</p> <p>-----.</p>

현행	개정안
<p>② <u>이행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이행계획</u>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p> <p>2. <u>이행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 설></p>	<p>② <u>추진계획</u>----- ----- ----- -----.</p> <p>1. <u>추진계획</u>----- -----</p> <p>2. <u>추진계획</u>----- -----</p> <p>③ <u>시장</u>은 <u>추진계획</u>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u>시장</u>은 최근 2년간의 <u>이행계획</u>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u>시장</u>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u>기본계획</u>과 <u>이행계획</u>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u>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u>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u>이행계획</u>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p>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 <u>추진계획</u> ----- ----- -----.</p> <p>② ----- ----- <u>기본전략</u>과 <u>추진계획</u>----- ----- -----.</p> <p>③ ----- <u>추진계획</u>-----.</p>
<p>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u>지속가능발전법</u>」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u>시장</u>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u>기본계획</u> 또는 <u>이행계획</u>의 변경을 수</p>	<p>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 제14조제4항 및 제5항-----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 <u>기본전략</u> 또는 <u>추진계획</u>-----</p>

현 행	개 정 안
<p>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p> <p>2. (생 략)</p> <p>⑤·⑥ (생 략)</p> <p>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u>이행계획</u>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u>지속가능성보고서</u>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u>지속가능성보고서</u>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제6조제2항에 따른 <u>이행계획</u>의 추진상황</p> <p>2. ~ 4. (생 략)</p>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u>기본계획</u> 및 <u>이행계획</u> 수립·변경 심의</p> <p>2. (생 략)</p> <p>3. <u>이행계획</u> 추진 상황 점검</p> <p>4. ~ 6. (생 략)</p>	<p>----- -----</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추진계획</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 -- <u>지속가능발전 보고서</u>----- -----.</p> <p>② <u>지속가능발전 보고서</u>----- -----.</p> <p>1. ----- <u>추진계획</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기본전략</u> 및 <u>추진계획</u> -----</p> <p>2. (현행과 같음)</p> <p>3. <u>추진계획</u> -----</p> <p>4. ~ 6. (현행과 같음)</p>